

# 서울특별시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 안내

적차량 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1.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2. 과태료 부가기준 및 금액
3. 도로사업소 연락처 및 서울시청 위치
4.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5. 서울시 운행제한시설 현황(강남/강북지역)
6. 가변속 미사용으로 인한 문제
7. 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별도제한 시설물 현황 지도 / 뒷면

### 1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 ▶ 총중량 40톤
- ▶ 축하중 10톤
- ▶ 차량의 폭 2.5m
- ▶ 차량의 높이 4m
- ▶ 길이 16.7m
- ▶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




###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시】

총중량 초과	축하중 초과	과태료금액(만원) (적발횟수에 따라 달리 부과)		
		1회	2회	3회
5톤 미만	2톤 미만	50	70	100
5톤 이상 15톤 미만	2톤 이상 4톤 미만	80	120	160
15톤 이상	4톤 이상	150	220	300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높이, 폭 초과	길이 초과	과태료금액(만원)
0.3m 미만	3m 미만	30
0.3m 이상 0.5m 미만	3m 이상 5m 미만	50
0.5m 이상	5m 이상	100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로법 제115조(벌칙))

▶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법 제117조 제1항(과태료))

### 3 도로사업소(단속부서) 연락처 및 서울시청 위치

구/군/부	주/야 연락처	담당 부서	주/야 연락처	주요 시설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 은평	(주) 2040-0321~2 (야) 2040-0390~1	강남, 송파 강동 서초일부	서부 (주) 300-8307, 8347 (야) 300-6400~1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주) 3284-5422, 5424 (야) 3284-5405	관악, 동작 금천, 서초 영등포 일부	북부 (주) 944-5421~3 (야) 944-5448~9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주) 2210-1522, 1561 (야) 2210-1501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서 (주) 2657-7922~3 (야) 2657-7900~1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오프라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접수)장소 :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4 / 120】



### 4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도로법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운행제한사항을 초과하는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허가 신청】 \*제한차량운행허가 시스템관리 ☎02-2630-1810

- ◆ 온라인 운행허가 신청 (<http://operas.eseoul.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전 (안전·소방·민방위) ⇒ 제한차량운행허가 ⇒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 ◆ 오프라인 운행허가 신청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전 (안전·소방·민방위)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및 노선자료)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4 / 120)

**신청인**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작성, 차량검사증(등록증 차량종량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

**신청서 및 구비서류접수**

**심사 (교량안전과)** ▶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검토

**협의 불필요시** / **협의 필요시** ▶ 타 도로 관리청 협의

**허가 또는 불허통보** (3일) / **허가 또는 불허통보** (7일)

제한차량 운행허가

### 5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현황

총중량 32톤 이하 시설물 (2021년 11월)

강북구역	32톤 이하	20톤(23톤) 이하	10톤(5톤) 이하
강서구	신월IC		
양천구	목동동축IC		
구로구	개봉교, 구로1교, 개봉철도고가, 가리봉철도고가, 오류IC, 공단IC	개봉고가(23톤)	
영등포	원호대교(남단램프), 성산대교 여의교, 여의상류IC, 영등포로타리, 도림고가차도, 도림천로, 대방천로		서강대로 남단 ~서울교 북단 (5톤)
금천구	철산교, 시흥IC		강남순환도로
동작구	노들고가도로(남단, 북단)		
관악구	도림교(관악), 신림1교, 동방1교		강남순환도로
서초구	잠수교, 반포교, 사방교, 강남터미널고가		우원신터널/선암교 강남순환도로
강남구	대치교, 현릉교(1·2차로), 삼성교 영등대교, 청담교		
송파구	성내교		
강동구	천호대교		

■ 일반차량 ■ 한강교량 ■ 고가도로 ■ 입체교차 ■ 일반도로 ■ 터널

\*경로를 사전에 확인 후 운행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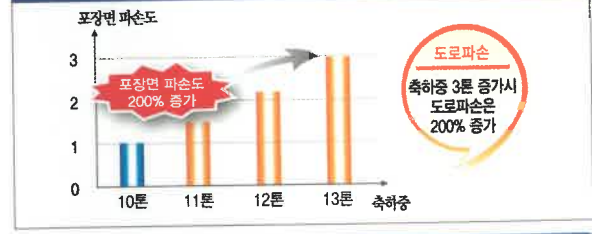
강북구역	32톤 이하	20톤(23톤) 이하	10톤(5톤) 이하
마포구	성산교, 성산2교, 성산대교(북단램프), 잠두봉고가		내부순환도로
서대문	흥연교, 흥연2교, 흥제교, 흥남교, 연희입체교차, 충정교, 현저고가, 봉원고가	모래내고가	내부순환도로
은평구	신응교, 증산교, 증산2교		내부순환도로
종로구	-	-	-
중구	남산육교고가, 염천교, 남산1호입구	서소문고가	
용산구	원호대교(북단램프), 잠수교, 옥천고가, 옥천북계도로, 삼각지고가, 한강로다리	한남2고가 남산관광(소월)고가	
강북구	-	-	-
성북구	안암2교, 월곡교, 북악스카이라이프2교		내부순환도로
동대문	안암교, 동진교, 용두4교, 중랑교, 용두교, 중암교, 제1제교, 이문고가		내부순환도로
성동구	군자교, 성동교(구) (서울숲~한양대) 영등대교(북단램프)		내부순환도로
도봉구	상계교, 도봉교, 도봉제1교		
노원구	월계교, 월계2교, 장월교		
중랑구	중랑교		
광진구	천호대교(북단램프)		

\*경로를 사전에 확인 후 운행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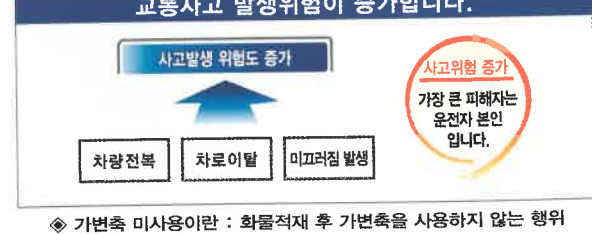
### 6 가변속 미사용으로 인한 문제

가변속 미사용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더욱 빠르게 파손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합니다.



◆ 가변속 미사용이란 : 화물적재 후 가변속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 7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 축하중 11톤 초과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도로파손
- 축하중 13톤 초과차량 1대는 승용차 21만대 통행량과 도로파손
- 축하중 15톤 초과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도로파손

▶ 자료 : 국토교통부